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11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A
	[redacted]
피 고	[redacted]도 [redacted]군수
변 론 종 결	2017. 9. 19.
판 결 선 고	2017. 11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1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817,70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167,230원(가산세 포함) 합계 1,984,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07년경 [redacted] [redacted]구 C아파트 203동 1609호(이하 '종전 주택'이라고 한다)를 취득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.

나. 원고는 2012. 6. 29. [redacted] [redacted]군 D, E에 있는 F건물 105동 304호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고 한다)를 취득한 후(소유권이전등기는 2012. 8. 3. 경료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2. 10. 2.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한 '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'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.

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. 1. 29.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취득세 1,817,70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167,230원(가산세 포함) 합계 1,984,930원을 부과 · 고지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. 5. 2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6. 9. 22. 이를 기각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1) 종전 주택은 원고의 장남인 G이,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남편인 B이 원고 명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로 각각 취득한 것이므로, 원고는 실제로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.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2013. 2.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, 2015. 1.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 등을 받았으며, 2015. 5. 4.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위해 장기간 입원하는 등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2주택 여부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2. 10. 2.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의2 본문은 "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"라고 규정하면서, 제1호에서 '1주택이 되는 경우'를, 제2호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'를 들고 있다.

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,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, ②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한 점, ③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남편과 장남이 원고에게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정당한 사유 유무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의2 단서는 "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에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란 법령에 의한 금지 ·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1주택이 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.

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서 이를 처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, ② 원고가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법령상 ·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③ 원고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쓰러진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5. 5. 4.인 점, ④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들이 종전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, 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두

판사 박종환

판사 이영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관계법령

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2. 10. 2.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0조의2(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)

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1주택이 되는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

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0조의2(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)

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,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, 12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. 다만,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.

1. 1주택이 되는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

부칙 <제11487호, 2012.10.2>

제3조(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1618호, 2013.1.1>

7조(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04

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17조의2(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)

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"란 이사, 근무지의 이동,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, 질병의 요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. 끝.